

제24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「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.

2015. 2. 3.

임실군의회 의장

1. 개정이유

- 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문 정비와 현행 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세대이상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건축법으로 허가된 공동주택 확대 지원(안 제3조)
- 나. 지원금액을 단지별로 2천만원에서 예산범위 내로 변경(안 제5조)
- 다. 지원기간을 5년이내에서 3년 이내로 기간 단축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2015년 본예산 50,000천원 반영
- 다. 기 타
 - (1) 입법예고 (2014. 12. 09 ~ 2014. 12 . 30)결과 : 의견없음
 - (2) 규제심사 : 비행정규제(기획감사실-12263호)
 - (3) 비용추계서 : 불입
 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불입
 - (4) 관련법 발취문 : 불입

임실군 조례 제 호

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주택법」 제43조제8항”을 “조례는 「주택법」 제43조제9항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받은”을 “받은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득한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, 지원건수 등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금액은 정부건설표준품셈 기준에 의거 공사원가의 80%이하로 하고 사업비중 관리주체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20%이상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5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심의 하여야”를 “심의하여 지원단지를 결정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택법」 제43조제8항, 제5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 <p>제5조(지원금액 등) ①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100분의 80이내에서 공동주택 단지별로 2천만원 이하로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② (생략)</p> <p>제6조(지원사업 신청 및 방법)</p> <p>① · ② · ③ (생략)</p> <p>④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 지원사업을</p>	<p>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주택법」 제43조제9항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받은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득한 ----- -----.</p> <p>제5조(지원금액 등) ①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, 지원건수 등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금액은 정부건설표준품셈 기준에 의거 공사원가의 80%이하로 하고 사업비중 관리주체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20%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지원사업 신청 및 방법)</p> <p>① ·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3년 -----</p>

신청할 수 없다.

제7조(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등) ① (생략)

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의한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서 지원 사업을 심의 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-----.

제7조(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심의하여 지원단지를 결정

③ (현행과 같음)

[별지 제1호서식]

임실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『주택법』 제43조제9항(관리주체 등)
- 관내 공동주택은 대부분 소규모로 열약한 유지관리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개보수시 사업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 개보수시 보조금 지급

2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관내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

나. 추계 결과

- 사업대상 : 관내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
-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: 50,000~70,000천원

다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붙임

3. 재원조달방안

- 2016년 본예산(수정예산) : 50,000천원 편성됨
 -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50,000천원

4. 작성자 : 민원봉사과장 홍효덕

붙임 : 연도별 비용추계표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5년)	2차년도 (2016년)	3차년도 (2017년)	4차년도 (2018년)	5차년도 (2019년)	계
세 출		50,000	60,000	60,000	70,000	70,000	310,000
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보조금		50,000	60,000	60,000	70,000	70,000	310,000
재원 조달		50,000	60,000	60,000	70,000	70,000	310,000
의존 재원	소 계	50,000	60,000	60,000	70,000	70,000	310,000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	균비	50,000	60,000	60,000	70,000	70,000	310,000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비고							

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

관리번호	2014A 전북임실070			
정책명	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		
소관부서	기관명	전라북도 임실군		
	부서명	민원봉사과		
	담당자명	진신우	전화번호	063-640-2293
주요 분석평가 내용 (민원봉사과)				
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(분석평가책임관)	<p>제8조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및 14조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을 고려한 구성토록 명시 필요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4조 분쟁조정위원 위촉 조건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포함하여 중립적이며 공익적인 입장에서 갈등이나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 ▪ 분쟁조정신청서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성별표기란 마련, 성별분리통통계가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음. 			
검토의견 반영 결과 (민원봉사과)	제8조 및 제14조는 금회 조례 개정시 개정되지 않는 내용으로 향후 조례 개정시 반영 하겠슴			
<p>2015년 01월 12일</p> <p>민원봉사과장</p> <p>분석평가책임관 귀하</p>				

참고 1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「주택법」

제43조(관리주체등)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3.12.24.>

1. 제1항에 따른 통지·요구의 방법 및 절차
2.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·운영 및 의결사항
3. 관리주체의 업무

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24.>

□ 「주택법 시행령」

제55조(관리주체의 업무 등) ① 법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.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.<개정 2008.2.29,2013.3.23,2014.4.24>

1.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·보수
2.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·청소·소독 및 쓰레기수거
3.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
4.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·적립 및 관리
5.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
6.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
7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